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2. 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9일
- 나. 제출자 : 고기판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11.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판 의원)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또한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음. 이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민간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안 제10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투명화·명확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현대행정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담당영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2010.12.5의결)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였고,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
----------	-----

발의연월일 : 2013년 11월 일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또한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음.

이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 (안 제10조)
-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영등포구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중 “제규정”을 “각종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목적외에 이를”을 “목적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작성한”을 “작성하였을”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한”을 “위반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생략)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② ----- 각 호-----

----- 필요한 경우-----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

-----.

② -----

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 제5조
에 따른 -----
-----.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영등포구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③ (생략)

④、⑤ (생략)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

----- 각종 규정-----
-----.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

----- 각 호-----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비용의 징수 등) ① (생략)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

제11조(운영지원) ① ----- 필요한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용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생략)

②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④ (생략)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 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감독) ①,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목적외에 -----.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항에 따라 -----

-----.

제14조(지도, 감독)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

-----.

④ 제3항에 따라 -----

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생략)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생략)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

제15조(사무편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작성하였을 -----
-----.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

----- 각 호-----
----- 발생하였을 -----

1. -----
----- 아니하였을 --

2. (현행과 같음)

3. -----
- 위반하였을 --

4. 그 밖에 -----
----- 발생하였을 --

제17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③ 제1항에 따라 -----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

----- 1회 이상 ---
-----.

② 제1항에 따른 -----

-----.